#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31

발의연월일: 2025. 3. 25.

발 의 자:조인철・이개호・문진석

주철현 • 이해민 • 박용갑

위성곤 • 한정애 • 이건태

이훈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육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그런데 현행법에 도심융합특구의 사업시행자, 외국인투자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특례가 부재하여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개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원 지원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0조의3(도심융합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조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 2.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 3.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심융합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0 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0조의3(도심융합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이 조에서 "도심융합특구"라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정원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장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사업

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 발사업

- 3.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 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 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